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6

발의연월일 : 2024. 6. 11.

발 의 자:이재정・민병덕・서영석

강준현 • 백혜련 • 권칠승

강유정 • 박희승 • 정진욱

강득구 · 정준호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·위생, 안전,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법률에 따른 행 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.

그러나 전기버스 충전소의 경우 소음과 분진, 대형 차량 진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, 대형화재가 발 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해당 업종의 제한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 충전소 및 물류시설, 특수가 연물의 저장소,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9조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31호까지에"를 "제35호까지에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 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「전기사 업법」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 차충전사업장
- 33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
- 34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5항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・플라스틱류・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(特殊可燃物)의 저장소
- 35. 가연성 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시설물 및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	제9조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
금지행위 등) 누구든지 학생의	금지행위 등)
보건・위생, 안전, 학습과 교육	
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	
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	
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	
만,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	
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	
터 <u>제31호까지에</u> 규정된 행위	<u>제35호까지에</u>
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	
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	
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	
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	
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	
제외한다.	<u>.</u>
1. ~ 31. (생 략)	1. ~ 3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	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
	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
	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운행과
	관련된 「전기사업법」 제2
	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

	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
	차충전사업장
<u><신 설></u>	<u>33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</u>
	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
	에 따른 물류시설
<u><신 설></u>	34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
	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5항
	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는 경
	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
	<u>무류・플라스틱류・석탄 및</u>
	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특수가연물(特殊可燃物)의
	저장소
<신 설>	35. 가연성 자재가 100분의 <u>50</u>
	이상인 시설물 및 재난이 발
	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
	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
	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